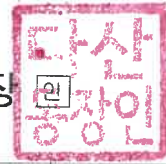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05월 01일

다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57-08-13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	거주불명등록 —
우**	우** 1965-05-22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	거주불명등록 —
양**	양** 1965-10-24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	거주불명등록 —
최**	최** 1966-03-27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5길	거주불명등록 —
이**	이** 1968-08-27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	거주불명등록 —
김**	김** 1970-07-2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다길	거주불명등록 —
염**	염** 1971-09-24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5길	거주불명등록 —
김**	김** 1973-10-0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다길	거주불명등록 —
손**	손** 1978-09-09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9길	거주불명등록 —
정**	정** 1982-01-2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	거주불명등록 —
최**	최** 1992-12-2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	거주불명등록 —